

# 原油導入交渉政策의 方向

□… 朴鳳煥 動資部長官은 지난 5월 8일 精油社대표, 종합무역상사 대…□  
□…표, 그리고 원유도입과 관련이 있는 민간상사대표등 약 30명과 회의를…□  
□…갖고, 앞으로 질서있는 原油導入교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原油導入交渉指針을 설명하고, 민간상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資…□  
□…料는 이 날 朴長官이 밝힌 설명문의 요지이다. <編輯者註> …□

## 國內外 需給動向

최근의 국제원유시장은 우선 공급측면에서는 이란과 이라크가 하루 2백만 배럴의 原油수출을 재개하고 있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하루 1천30만배럴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는 반면, 수요측면에서는 OECD 선진국을 비롯한 소비국들의 景氣가 장기침체상태에 있고, 이들 나라들이 소비절약과 함께 代替에너지의 活用을 추진함에 따라 수요가 감퇴되고 있다.

따라서 自由世界 전체로는 하루 2백만~3백만 배럴의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産油國들이 公示價格과 프리미엄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그 동안의 不況과 정부의 강력한 소비절약시책에 따라 수요는 79년 이래 감소되고 있는데 비해 공급측면에서는 금년도의 경우 總需要豫想分 하루 56만 배럴에 대하여는 장기 공급계약으로 충족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금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需給事情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종전 어려운 시기에 채택했던 「우선 物量確保施策」의 부작용을 반성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 民間商社 交渉活動의 評價

이란의 回教革命을 계기로 하여 세계 原油市

場은 79년도말부터 지난 해 연말까지 몹시 靑박하였으며, 정부는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補充的인 방법으로 80년 4월 民間商社에 대해 原油교섭활동을 개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사는 국제시장이 靑박한 이 기간중에 原油를 조달하여 정부가 原油부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市場靑박기간 중에는 교섭기반을 조성하는데 그쳤고, 구체적인 장기 공급계약은 국제원유수급상황이 호전된 금년 1/4分期에 들어 와서 속속 실현되고 있으며, 많은 會社들이 국제시장이 호전되고 국내수급 사정이 정상적인 이 時点에서 새로이 原油도입 교섭을 서두르고 있다.

그 동안 어려운 시기에 여러 企業들이 原油도입교섭에 나서서 기여한 功도 많았지만, 때로는 副作用과 物議를 일으킨 적도 없지 않았다. 例컨데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교섭과정의 과당경쟁으로 國威를 손상시키는 일도 있었고, 국내기업끼리의 지나친 競爭으로 교섭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手数料를 요구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사례도 있으며, 국내정유회사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확보만 하면 처리된다는 인식에서 무분별하게 교섭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過渡期的 副作用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서있는 原油도입교섭을 위해 이번에 「原油交渉對策方案」을 마련했다.

## 原油導入交渉対策

최근 국제원유수급사정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原油流通市場에서 메이저의 지위는 더욱 약화될 것이며, 産油國의 판매방식도 경제협력과 連繫시켜 직접거래(D-D)의 비중을 높여갈 것임에 대비하고, 또한 그동안 민간상사들이 닦아 놓은 교섭기반을 활용하여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계속 民間商社에 의한 원유도입교섭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認定基準를 설정하고 질서있고 장기안정적인 도입교섭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 1. 基本方向

#### (1) 力点事項

- 값싼 原油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 장기안정적 導入先의 확보를 추진한다.
- 導入先의 多邊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 (2) 交渉主体

- 精油社는 자체소유原油를 책임확보토록 한다.
- 精油社는 민간상사의 교섭능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 2. 導入交渉商社の 認定基準

「1개 産油國에 1개 商社」, 즉 「1 國 1社主

義」 교섭원칙을 계속 적용하며 각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1) 이미 導入先이 확보되어 장기안정 공급에 따라 도입되고 있는 경우에는 既得權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 (2) 현재 교섭이 있는 경우에는 既得權을 인정하되 精油社와 사전에 物量이 합의된 경우에 인정한다.
- (3) 앞으로 신규로 導入先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① 精油社, ② 經協進出商社, ③ 一般商社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3. 制度運營指針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입교섭商社를 인정하되 이를 운영하는 지침으로서는

첫째, 精油社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분에 대해서만 민간상사의 교섭을 허용한다.

둘째, 精油社가 도입하고 있는 産油國에 민간상사의 교섭전개는 억제한다.

셋째, 도입가격이 기존가격도입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교섭을 인정한다. 다만 原油導入先多邊化를 위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넷째, 교섭상대국정부 또는 주재공관장이 교체를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既교섭상사를 다른 상사로 교체할 수 있다. \*

사라지는 청탁풍조

밝아오는 정의사회